

**물류분야 플랫폼 관리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4. 1.

**국 토 교 통 부
물 류 산 업 과**

담 당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	담당자 송하윤	☎ 044-201-4025	FAX 044-201-5601
		담당자 문혜리	☎ 044-201-4020	

〈 목 차 〉

I. 과업 개요	1
II. 과업 주요내용	3
III. 과업 수행지침	4
IV. 예정 공정표	10
V.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1
VI.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3
VII.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15

붙임 : 제안서 양식(서식 #1 ~ 서식 #6)

I. 과업 개요

1. 과업 명칭

- 물류분야 플랫폼 관리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 과업 추진배경

- 최근 물류산업도 여객 등과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수요자(화주)와 물류기업을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
 - * 화물운송플랫폼의 경우, 전체 운송물량의 약 30%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며, 차주(개별)의 경우 전체 물량의 34.9%를 플랫폼을 통해 확보('22, KOTI)
 - 화물운송·배달대행·택배서비스 중개, 물류창고 연계 등 기존 물류업에 기반한 플랫폼은 물론, 차주-주차장 연계 등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
- 물류분야 내 플랫폼 확산은 디지털화 등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중·소형 물류기업의 경우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
 - 단, 플랫폼에 내재하는 한계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상존
 - * 소수 플랫폼사의 독점 지배력 행사, 기존 업계와의 갈등, 이용자 보호 등
 - 현재 플랫폼은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며,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감독에 한계
 - * 플랫폼 내 과적 요구, 차주 재위탁 등 불법행위, 차주 운임 지급에 대한 책임회피
 - 플랫폼 사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 이에 더하여 디지털화 촉진*, 차주 일감 확보 등 플랫폼이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도 고려하여 활성화 방안 검토
 - * 화물운송플랫폼은 전자인수증 또는 전자화물위탁증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로 플랫폼 확대 시 운송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기대
 - ☞ 물류분야 내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플랫폼을 활성화하되, 플랫폼 확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마련 추진

3. 과업 목적

- 물류분야 플랫폼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검토
- 물류분야 플랫폼 운영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 검토
- 물류분야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4. 과업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금 70,000,000원(금 칠천만원, VAT 포함)

II. 과업 주요내용

- 물류분야 플랫폼의 정의, 업종 신설 등 제도화 방안 검토
 - 물류분야 플랫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세부 업종* 신설(등록업 또는 신고업) 방안 검토 등 플랫폼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마련
 - * 물류분야 플랫폼의 하위분류로 화물운송, 생활물류, 물류시설 등으로 재분류
 - 물류산업의 주체로서 플랫폼의 역할·책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 * 화물운송의 경우 기존 운송사 등과 같이 플랫폼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
 - 각 세부 업종별 갈등 및 문제 요인, 기존 연계 업종의 현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 고려하고, 각 분야별 제도적 관리 수위 등 검토
 - 공정한 플랫폼 시장 조성을 위해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각종 부당행위(타 플랫폼 이용 시 정지 처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물류분야 플랫폼 운영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 검토
 - 플랫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과적 등)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플랫폼社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검토
 - 특히, 화물운송 완료 후 차주에게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에 운임 정산 등의 책임 부여 방안 검토
 - 부당한 약관 등 플랫폼社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이용자(예. 화주·운수사·차주) 간 이용약관(안) 마련 및 권고·활용 방안 검토
- 물류분야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우수화물정보망인증社·이용자에 인센티브 부여, 전자인수증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플랫폼상 거래물량 확대 유도 등 활성화 방안 검토
 - 한편, 플랫폼상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공유하여 이를 정부·민간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 등 활용 방안도 검토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로 한다.
- 나. 과업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 담당자 명단, 착수계획 및 사업 예정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과업 책임자는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과업 참여자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23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
- 라.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로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마.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 과업수행자는 본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아.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한다.

- 자. 과업수행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위탁 시행대상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선정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차.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이 종료되는 단계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카.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수지침

가. 성과품 소유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이에 대한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나. 용역비용의 사후 정산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인쇄비, 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미집행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하는 경우, 「국가업무 대
행사업 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6호(2017. 12. 29.) 제9조
(외주사업의 시행)의 제규정에 따라 계약 및 집행·관리되며 계약
상대자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동지침 제9조4항에 따라
제3자 위탁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을 국고로 반납한다.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상의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 시행과정에서 과업 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 지시내용 및 용역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마.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보안 대책

- 본 과업의 수행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 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사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성과품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업무 성과품은 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 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 인쇄는 전산 작업하며, 마스터 또는 읍셋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전산작업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 시행한다.

나. 성과품 제출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최종보고서	과업준공 시	30부	
최종보고서CD	과업준공 시	2매	

IV. 예정 공정표

세부사업	비중 (%)	7개월						
		1	2	3	4	5	6	7
국내외 운송 플랫폼 현황 및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15	10	5					
물류분야 플랫폼 제도화 방안 검토	25		5	10	10			
물류분야 플랫폼 운영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 검토	35			5	10	10	10	
물류분야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5						10	15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
누적 공정률(%)		10	20	35	55	65	85	100

V.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VI.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안서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50매 이내로 하며 아래한글로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 인하여야 하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제출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일반현황에 기재할 참여연구원은 참여회사의 직원으로 실제로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본 제안서 작성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름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계약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VII.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 선정절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방법	총 배점	기준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	기관평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내용에 따라 적용)	계량	7	※계량평가 기준 참조				
2	인력평가	○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	8	※계량평가 기준 참조				
3	기술·지식 능력 (과업접근 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 량	25	25	20	15	10	5
4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10	10	8	6	4	2
5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경력학력, 전문성 등	”	10	10	8	6	3	2
6	지원기술·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연구 성과물 활용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10	10	8	6	4	2
7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기타 특기사항	”	10	10	8	6	4	2
계				80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1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함

※ 종합점수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7점)

구분	0회	1회	2회 이상
점수	7	5	3

※ 최근 3년간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함

-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수(8점)

구분	20인 이상	15인 이상 20인 미만	10인 이상 1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5인 미만
점수	8	6	4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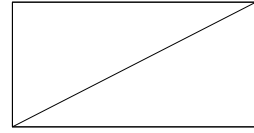
□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기술능력 평가시 평가 착안사항

- 주요 과업내용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실적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수행 조직체계 및 연구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착안사항으로 하여 평가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업제안서

용역명 : 물류분야 플랫폼 관리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업체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 기재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본과업 참여자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조원					
기 타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사본(재직증명서)

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 주) 1. 【서식 4】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물류분야 플랫폼 관리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위 서약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